

퍼시스 인권경영선언문

퍼시스는 당사의 인권 존중 및 실천 의지를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기 위하여 본 인권경영선언문을 채택하였습니다. 당사는 “구성원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고, 고객과 주주에게는 지속 가능한 가치를 제공하며,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바르고 좋은 회사를 만든다”는 창업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인권 존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행하겠다는 약속을 본 선언문의 형태로 공표합니다. 당사는 사내 윤리규정 및 실천지침을 통해 본 인권경영선언문에서 약속한 15개 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, 협력사를 비롯한 외부 이해관계자에게도 본 선언문의 취지를 공유함과 동시에 자발적인 준수와 실천을 권유드립니다.

1. 국제 인권 규범에 대한 지지 및 존중

국제권리장전(세계인권선언,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,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), UN 기업과 인권이행 원칙(UNGPs), 국제노동기구(ILO) 노동 기본원칙 및 권리 선언, OECD 다국적기업 책임경영 가이드라인,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, 아동권리협약,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,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다양한 국제 인권 규범을 지지하고 존중한다.

2. 다양성 존중

다양한 가치관과 개인의 차이를 존중하며,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.

3. 다양한 형태의 차별 금지

인종, 민족, 피부색, 신념, 종교, 성적 지향, 성별, 임신 여부, 국적, 사회적 지위, 연령, 출신 지역, 가족 배경,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, 군 복무 이력, 각국 법령으로 보호되는 특성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, 이를 조장하지 않는다.

4. 모든 형태의 괴롭힘 금지

정신적·신체적 학대, 성희롱 등 모든 형태의 괴롭힘을 명확히 금지한다.

5.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 조성

산업안전보건 및 위생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, 임직원을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개선한다.

6. 적정 근로시간 및 임금 보장

당사가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각 국가 및 지역의 노동법 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, 근로시간, 임금, 초과근무, 수당 등과 관련된 기준을 철저히 따른다.

7. 아동 노동 금지

당사가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각 국가 및 지역의 노동법 또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근로 가능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아동의 노동을 전면 금지한다.

8. 강제 노동 금지

노예 노동, 채무 노동, 채무에 따른 구속 등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엄격히 금지한다.

9.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존중

당사가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각 국가 및 지역의 노동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을 존중하며, 결사하지 않을 권리 또한 동등하게 보장한다.

10. 내부 고발 제도 운영

임직원 및 협력사를 비롯한 비즈니스 파트너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인권 문제에 대해 상담하고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한다. 신고 및 상담에 대한 모든 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며,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철저히 금지한다.

11. 인권 침해 예방 체계 운영

컴플라이언스 담당 부서는 인권 존중 및 인권 침해 예방 관련 규정과 절차를 수립하고 운영한다. 또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과 인식 제고 활동을 시행하며, 협력사를 대상으로 동일한 활동을 진행하도록 협의 및 노력한다.

12. 인권 실사 체계 구축 및 운영

인권 존중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인권 실사 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도록 노력한다. 사업 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고, 이를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한 일련의 정기적 활동을 추진한다.

13. 대외 커뮤니케이션 및 인권 존중 문화 확산

본 선언문의 내용을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하고,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추진한다.

14. 임직원의 책임 인식 및 이행

1. 임직원은 본 선언문 및 관련 규정을 이해하고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.
2. 본 선언문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피해야 하며, 위반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즉시 보고해야 한다.

15. 위반에 대한 징계 부여

1. 본 선언문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.
2. 협력사를 비롯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본 선언문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.